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5. 11. / (총 10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홍 승 령	전 화	044-202-3575				
전략기획팀	담 당 자	김 민 주	건 - 와 	044-202-3576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 장	노 혜 원	전 화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 당 자	이 승 훈	[ 선 확	044-200-2295				
교육부	과 장	조 명 연	전 화	044-203-6877				
학생건강정책과	담 당 자	정 희 권	선 확	044-203-6547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이 중 규	전 화	044-202-2730				
보험급여지원팀	담 당 자	조 영 대	한 확	044-202-273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등교수업 대비 학교 방역관리 상황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등교 수업 대비 학교 방역관리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클럽 출입 명부에 있는 절반 정도의 출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 시, 이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 또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같은 사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많은** 국민께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긴장하고 잘 대처해 제2·제3의 전파를 최소화하고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자고 강조하였다.











## 1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 상황 및 조치 계획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에서는 서울	全시·인	천시・기	경기도 등	지병	·사치
단체를 중심으로 이	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	및	방 역
조치 계획에 대하여 등	논의하였다.					

- □ 지난 5월 6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뒤, 서울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7개 시설의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5개 클럽의 출입명부와 CCTV 자료를 확보하여 방문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5월 10일 18시까지 클럽 방문 인원 5,517명 중 2,405명과 통화하였고, 3,112명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클럽 등 인근 업소를 방문한 사람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음성인 경우에도 능동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5월 1일 22시부터 5월 2일 4시까지 3개 클럽(킹, 퀸 트렁크) 방문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5월 7일부터 서울시는 즉각대응반을 파견하고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 자치구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문자를 2회 발송하여 외출 자제 및 진단검사 등을 안내하였다.
    - 앞으로도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5월 9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관내 2,060여 개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301명을 동원하여 집합 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며,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다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인천시는 4월 29일 이후 이태원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링크, 더파운틴, 소호, 힘)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인 접촉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또한 5월 10일 20시부터 관내 유흥업소(클립, 룸살롱, 노래클립, 스탠드바, 카바레)와 콜라텍에 대하여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감염 확산 시 방역비용 등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신규 환자와 신입 종사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입원과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경기도는 6개 이태원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을 방문한 관내 주민에 대하여 무료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 10일부터는 대인 접촉 금지를 명령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건강 진단을 받고, 역학조사에 응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
  - 또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성남시 의료원과 티맥스 등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 경기도는 5월 10일부터 관내 모든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5,730여 개 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명령서와 고지문을 업소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 한편 5월 8일 20시부터 6월 7일까지는 경기도 및 관내 시군,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35개반 215명을 구성하여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경우,
  -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에 머무르며 보건소나 1339에 신고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주시는 등 방역당국의 조치 사항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는 엄격히 보호되고 존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 2 등교 수업 대비 학교 방역 관리 상황

- 교육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5월 7일에 「유·초·중등학교 학교방역 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학교 유입 방지,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 관리, ▲확진자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등 학교 방역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 코로나19의 학교 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교 1주일 전부터 가정 내에서 매일 아침 설문조사 형식으로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학생·동거인의 최근 14일간 해외 여행력을 포함한 감염 개연성 등의 정보를 학교에 통보하는 일일점검 시스템을 가동한다. 5월 13일 등교 수업 대상인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5월 7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 등교 시에도 입실 전, 일과 중 하루 최소 2회 이상의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매 수업시간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및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교육 활동 중에는 충분한 개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책상 및 물품 재배치, 수시로 일상 소독을 위한 비품 구비 등을 하여야 한다.
- 학생 및 교직원 중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귀가하고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한다.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가 중지되며 의사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상 및 자가격리 학생은 14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이 경우에는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된다.
- □ 또한 등교 전까지 방역 조치 지침을 보완하고, 학교 방역 현장 점검과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3 요양·정신병원에 진단검사 확대 적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기존) 8~16만 원 전액 본인 부담 → (개선) 약 4만 원 본인부담 (50%)
- 이 사항은 **5월 13일부터 적용**되어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앞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에는 하루 **평균 1,694명이 입원**하고 있으며('19년 기준),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를 통하여, 지역 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8. 마스크 착용법
  -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붙임1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처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붙임2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 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